

1. 개정이유

동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화하고,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관련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 및 과잉행정 방지 관련 누적 회차 적용 기준 마련(별표 I. 제1호 및 제2호)

-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위반행위가 있는 날에서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명확하게 개정

나.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장치 마련(제11조제3항)

- 행정처분 개시일 이전에 처분내역을 수협에 통보토록 규정

다.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 종사 어선 「어선안전조업법」 적용 근거 마련 (별표 II. 제1호마목 신설)

-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적용토록 규정

라. 구획어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해기사면허 포함) 기준 강화(별표 II. 제2호가목 표의 제30호)

- 행정처분 : (현행) 1차 경고, 2차 30일, 3차 45일
(개정)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마. 양식면허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별표 II. 제1호나목 표의 제2호)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구분하여 처분토록 규정

바. 단속기관의 행정처분 의뢰 근거 신설(제3조제1항 및 제2항)

○ 해양경찰의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행위를 일관되게 유지토록 규정

사. 행정규칙 조문 오기 및 법령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2·3·5·6·7·8·9·10·11·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21 ~ 4.29.) 예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를 “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치·취소”를 “정지·취소”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기관의 소속직원(이하 “단속기관 소속 직원”이라 한다)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단속기관 소속직원”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재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송부하여야”를 “보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록·관리하여야”를 각각 “기록·관리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황(바다 상황)”을 “바다 상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송부하여”를 “보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인정되면”을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송부하고”를 “보내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하여야”를 “시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황”을 “바다 상황”으로, “수급상황”을 “수요·공급 상황”으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기재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인하여 제1항”을 “제1항”으로,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를 “이행을 확인하게 해야”로 한다.

제9조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0조 후단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등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어업등행정처분의 시작일 이전에 그 처분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어업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 하며”를 “보고해야 하며”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I 제1호 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며,”로 하고, 같은 호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횟수(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횟수를 포함한다)가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적용하고, 어획물운반선의 대체·매도 및 임대로 인하여 새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등은 이를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 I. 일반기준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I 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등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등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등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 표 2)의 위반행위란 중 “제10조제3항제1
호에 따른”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양식장 바깥에 양식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가목 표 제30호의 행정처분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제10조에 따른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 제2호	경고	경고	취소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처분의 요구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u>관하여</u>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u>관해서는</u>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해기 사면허의 <u>정지·취소</u> 및 해기 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 행정처분”이라 한다)의 요구	2. ----- ----- <u>정지·취소</u>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 이라 <u>한다</u>)은 어업자등 또는 양 식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법령 (이하 “수산관계법령”이라 한 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어업자등 또는 양 식업자등의 어업면허증, 어업허 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 운반업등록증,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① ----- ----- ---- <u>한다</u>) 또는 수산관계법령 <u>위반행위 단속기관의 소속직원</u> <u>(이하 “단속기관 소속 직원”이</u> <u>라 한다</u> ----- ----- ----- ----- ----- -----

선적증서, 등록필증 또는 해기사면허증(이하 “어업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해당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압류한 어업면허증등과 제2항 각 호의 서류

----- 발급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 또는 단속기관 소속직원-----

보고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적은 -----

③ -----

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하 “어선등”이라 한다)을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며,

----- 해야 -----.

③ -----

----- 명해야 -----
-----.

④ -----

----- 기록·관리해야 -----
-----.

----- 기록·관리해야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

제9조에 따른 관리·감독이 수
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
대방이 2회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하게 하는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
수와 해황(바다 상황) 등을 고
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이
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③ 관할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어선등을 계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기한이 끝
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류대상 어선등의 선
적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명령서
를 송부하여 계류 조치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
----- 따르지

-----.

② -----

--- 바다 상황 -----

-----.

③ -----
기한까지 -----
않은 -----

해야 ----.

④ -----

-- 보내 -----
-----.

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등의 계류 조치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서를 송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명령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류 중인 어선등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8조(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여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30일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⑤ -----

----- 인정하면 -----

-----.

----- 보내고 -----

--- 통보해야 -----.

⑥ -----

----- 해야 -----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 ① -----

----- 정해야 -----.

② ----- 시정해야 -----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정할 때에는 해황, 어장·양식장의 조건, 수산종자의 수급상황, 어업·양식업의 시기 등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때에는 어업등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내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초 이행기한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정완료 통보서에 증명

-----.

③ -----
----- 바다상황 -----

수요·공급 상황 -----

----- 고려해야 -----

기록해야 ----.

④ -----
----- 제1항 -----
----- 기 -----
한까지 -----

-----.

----- 신청해야 -----.

⑤ -----

서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
며, 관할 행정청은 어업감독 공
무원에게 그 이행 여부를 확인
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등행정처분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계류 중인 어선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에서 벗어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어선등의 소재 파악)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어선등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재를 파악하여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① 관할 행정청은 다른 행정기

 ----- 제출해야 -----

 ----- 이행을 확인하게 해
야 -----.

제9조(감독) -----

----- 확인해야 -----

----- 보고해야 -----
-----.

제10조(어선등의 소재 파악) ----

-----.

--- 협조해야 -----.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① -----

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 및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대한 절차 이행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 해야 하
며-----
----- 해
야 한다.

② -----

----- 통보
해야 ----.

③ 관할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등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어업등행정처분의 시작일 이전에 그 처분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어업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보고) -----

----- 보고해야

<u>야 하며</u>, 시·도지사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 한다.</u> 1.·2. (생 략)	<u>하며</u>----- ----- ----- <u>보고해야 한다.</u> 1.·2. (현행과 같음)
---	--